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 신 고 인

1. 이 름 : 태현식 <세종물류기업 차량구입>
2. 이 름 : 김기규 <세종물류기업 차량구입>
3. 이 름 : 권중탁 <세종물류기업 차량구입>
4. 이 름 : 조병길 <세종물류기업 차량구입>
5. 이 름 : 정종국 <정우물류 차량구입>
6. 이 름 : 김종진 <제이씨와이하진운수 차량구입>

7. 이 름 : 장준 <조은운수 차량구입>

8. 단 체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위 신고인 대리인 : 김남국 변호사 법무법인 예울

## 피 신 고 인

1. 주식회사 제이씨와이하진운수

대표이사 : 한 재 도

2. 주식회사 정우물류

대표이사 : 장 순 열

3. 주식회사 세종기업물류

대표이사 : 박 순 옥

#### 4. 주식회사 조은운수

대표이사 : 정 하 국

## 신 고 내 용

### 1. 당사자 관계 및 우체국 택배 운영 형태

#### 가. 당사자 관계

신고인들은 피신고인들과 택배 배달 위탁업무를 체결한 택배기사들이며, 피신고인들은 우체국 예금 및 택배 등의 우편 사업을 영위하는 '우정사업본부'와 택배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입니다.

#### 나. 우체국 택배 운영 형태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사업은 각 지역 우체국에서 수하물을 집하한 다음 송달장소로의 배달 업무는 지역·물량 등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후 그 대부분을 개별 업체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피신고인들과 같이 우정사업본부와 택배위탁업무를 수탁 받은 개별 업체들은 다시 동 업무에 대하여 배달구역, 배달방법, 손해배상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개개의 택배기사들에게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서

울과 경기, 인천 지방의 대 도시 중심으로 약 1,830여명의 위탁 택배기사들이 우체국 택배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형태 때문에 위탁업체와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위탁업체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당사자 이름만 바꾸어 수포우편물 용역 ‘위·수탁계약서’로 사용하고 있고, 동 표준계약서는 모든 위탁업체가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른 증거자료들과 함께 추후에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피신고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피신고인들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신고인은 피신고인들의 위법한 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위법한 행위를 우선 신고하고, 다른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사례 및 자료를 취합하여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택배차량 구입 강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과 택배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운송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 받은 번호판과 배송트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을 포함한 택배기사들은 원래부터 택배배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는 운송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들은 무조건 자신들이 제공하는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며,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번호판을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월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형성된 사용료를 매달 지불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특히 피신고인들이 분양하는 2013년형 포터(트럭)의 신차가격은 13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차량의 가액을 1000만 원 이상 부풀려 무려 2,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차량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싸서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런 경우 계약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을 뿐이며, 지나친 가격을 약간만 절충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도 완전히 묵살하였습니다. 신고인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차량 가격 때문에 절대로 피신고인들이 강매하는 차량을 매입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택배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피신고인들이 제공하는 차량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운송 사업에 필요한 번호판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도 협의가 아닌 피신고인들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신고인은 그 어떤 이의도 할 수 없었으며, 그저 일방적 통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 나. 부당한 차량위탁 관리비 지급 강요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5조 (위탁관리비) ① “을”은 위 차량에 대한 위탁 관리비를 매월 십오만 원(부가세별도)을 매월 급여일 운영 위탁관리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물가 및 관리비용의 상승요인이 있는 경우 인상된다.

제6조 (차량의 관리) ① “을”은 차량을 인수 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

제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항시 사업구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이를 태만히 한 결과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신고인과 피신고인 (주)세종기업물류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신고인은 차량을 인수 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 등 차량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피신고인에게 차량 ‘위탁 관리비’라는 명목의 비용을 매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 규정에 따르면 차량 관리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고,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도 신고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은 실질적으로 차량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피신고인에게 중복하여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출한 차량관리비를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피신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부당하게 중복 지급·강요당한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위반행위 사례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다. 그 외 피신고인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피신고인들은 현저히 낮은 대가에 의한 용역제공 요구 또는 기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배송 트럭 도장 비를 신고인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한편 도장 업체 선정 및 가격 등을 아무런 협의 없이 피신고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비용만을 통보하고 지급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신고인들은 피신고인들이 특정 업체들과 담합하여 평균 도장비 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책정하였을 것이 강하게 의심되었지만,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어떻게 못하고 피신고인들이 요구한 도장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정우물류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제공하기로 계약되어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배송용 번호판이 아닌 냉동차 운행 번호판을 제공하였습니다. 피신고인 정우물류가 제공한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할 콤프레셔가 없었고, 정우물류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모형 콤프레셔를 달고 냉동차량을 운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송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 외 피신고인들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서 제출 이후 추가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 3.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고인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신고인들과 불공정한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인들부터 부당한 이익을 계속적으로 편취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신청인들은 귀 위원회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시어 피신고인들의 드러나지 않은 위법한 행위들까지 찾아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여 이번 기회에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길 바랍니다.

### 증 거 자 료

※ 관련 자료는 추후 개별 기업별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신고인	태 현 식 (인)
	김 기 규 (인)
	권 중 탁 (인)
	조 병 길 (인)
	정 종 국 (인)

김 종 진 (인)

장 준 (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인)

위 신고인 대리인 : 법무법인 예울 김남국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귀중